

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8월 24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8월 2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4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10년 9월 6일) 상정 원안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총무과장 김영국)

□ 제안이유

-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과 단위기구 신설·통폐합 및 명칭변경에 맞추어 사무 위임사항을 조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기구개편에 따라 사무위임부서명 변경

- 감사실 → 감사관
- 총무과 → 행정지원과
- 체육청소년재단 → 체육진흥과
- 농산지원과 → 녹색농정과
- 가정복지과 → 가족여성과

나. 기구개편에 따라 사무위임사항 조정

-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무 위임 신설(정보통

신과)

-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무 위임부서 변경(사회복지과 → 민원여권과)
- 노인복지 및 기초노령연금 사무 위임부서 변경(가족여성과 → 주민 생활지원과)
- 소규모 건축물 허가에 관한 사무 위임 신설(건축과)
-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무 위임 신설(교통정책과)
-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무 위임 신설(교통시설과)
- 하천관리 사무 위임부서 변경(하수과 → 재난안전관리과)

다. 법령개정에 따른 사무위임 근거조항 정비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 내용과 같음. (병합심사)	

4. 토론효지

- ▶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찬반토론과 같음
(병합심사)

가. 반대토론

나. 찬성토론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위임사항) ① 시장의 권한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시장의 권한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.

③ 시장의 권한 중 시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.

별표를 삭제하고, 별표 1·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※ “별지” [별표 1] 시 사무의 구 위임 사항(제2조 관련)은 첨부를 생략함.